

조 정 합 의 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2서울조정1326(정정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이상한 해고'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나. 본문 : 노컷뉴스는 지난 8월 22일자 사회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상한' 해고> 기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내부문제를 지적한 직원(황모씨)을 오히려 비리직원으로 몰아 해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당해고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황씨가 내부문제를 제기한 시점(올해 3월) 이전(지난해 11월)부터 국민권익위의 황씨 등에 대한 '부당경력 산정' 조사가 있어 왔고, 권익위, 자체감사 및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인사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황씨가 파면된 것이므로, 황씨의 문제제기와 '파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사 중 '내부비리 문제제기를 원장이 덮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황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확인되어 정정합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노컷뉴스> 사회면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012년 9월 24일 12: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3483>)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인 대리인

남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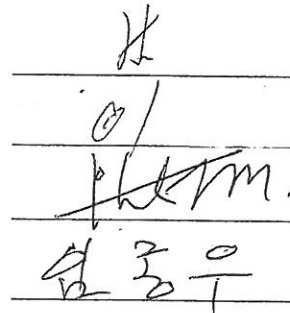
피신청인 대리인

윤

조사관

임

종 우


The image shows three handwritten signatures on horizontal lines. The first signature is for the applicant's representative (남 이), the second is for the respondent's representative (윤), and the third is for the mediator (임 종 우).